

「고단위플러스」 특약

제1조 적용범위

고단위플러스(이하 "이 예금"이라 함)의 거래에는 이 특약 외에 『예금거래 기본약관』 및 『거치식예금 약관』을 적용합니다.

제2조 예금과목

이 예금은 정기예금으로 합니다.

제3조 상품의 종류

- ① 이 예금은 「금리확정형」과 「금리연동형」 2종류가 있습니다.
- ② 「금리연동형」은 「1개월연동형」, 「3개월연동형」, 「6개월연동형」과 「1년연동형」 4종류가 있습니다.

제4조 가입기간

- ① 「금리확정형」은 1개월 이상 5년 이하 일단위로 자유롭게 만기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.
- ② 「금리연동형」은 1개월 연동형은 1년제, 3개월 및 6개월 연동형은 1,2,3,5년제, 1년 연동형은 5년제가 가능합니다.

제5조 최저가입금액

- ① 「금리확정형」은 최저 1백만원 이상 가입해야 합니다.
- ② 「금리연동형」은 최저 1천만원 이상 가입해야 합니다.
- ③ 제 3조 1항의 상품의 종류에 관계없이 인터넷뱅킹, 스마트폰뱅킹에서는 최저가입금액을 1만원으로 합니다.

제6조 「금리확정형」의 이자지급

「금리확정형」의 이자지급방식은 만기일시지급식, 이자지급식, 수시이자지급식, 연원가식이 있습니다.

1. 만기일시지급식의 경우 이자는 만기일 이후 원금과 함께 지급할 수 있습니다.
2. 이자지급식의 경우 이자는 예금당시 고객의 지정에 따라 월별, 3개월별 또는 매1년마다 지급할 수 있습니다.
3. 수시이자지급식의 경우 이자는 경과기간에 대하여 고객이 지정하는 날까지 지급할 수 있으며, 이자를 지급하지 않은 기간에 대하여는 만기일 이후 원금과 함께 지급 할 수 있습니다.
4. 연원가식의 경우 이자는 예금일부터 매1년 응당일에 원천징수 후 원금에 가산합니다. 단, 응당일이 휴일인 경우는 응당일에 이은 첫 영업일을 응당일로 하고, 응당일이 없는 경우에는 그 월이 말일을 응당일로 합니다.

제7조 「금리연동형」의 이자지급

「금리연동형」의 이자지급방식은 만기일시지급식, 이자지급식, 연원가식이 있습니다.

- ① 「금리연동형」의 이율은 예금 당시 고객의 지정에 의해 예금일 및 예금일부터 매1개월 응당일 또는 매 3개월 응당일, 또는 매1년 응당일을 이율결정일로 하여 적용합니다. 단, 응당일 휴일인 경우는 응당일에 이은 첫 영업일을 응당일로 하고, 응당일이 없는 경우에는 그 월의 말일을 응당일로 합니다.
1. 만기일시지급식의 경우 이자는 매 이율 결정일마다 복리로 셈하여 만기일 이후 원금과 함께 지급할 수 있습니다.
2. 이자지급식의 경우 이자는 예금 당시 고객의 지정에 따라 월별, 3개월별 또는 매 1년마다 지급할 수 있습니다.
3. 연원가식의 경우 이자는 예금일부터 매1년 응당일에 원천징수 후 원금에 가산할 수 있습니다.

제8조 이자계산

이 예금의 이자계산은 일단위로 합니다.

단, 「금리확정형」의 월이자지급식 이자계산은 월단위로 합니다.

제9조 금리우대 쿠폰

금리우대 쿠폰의 우대금리는 하나원큐 내 쿠폰함 또는 상품 가입시 제공되는 쿠폰의 우대금리를 따르며, 만기해지시에 기본금리에 가산하여 지급합니다.

단, 신규 가입시에만 쿠폰 사용이 가능하며, 재예치 또는 중도해지시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.

제10조 「금리확정형」 중도해지

예금주가 만기일전에 지급청구 할 때는 예금일로부터 지급일 전일까지 기간에 대해 영업점에 고시한 기간별 중도해지이율을 적용합니다.

제11조 「금리연동형」 중도해지

- ① 예금주가 만기일전 예금일로부터 1연동기간이 도래하기 전에 지급청구 할 때는 예금일로부터 지급일 전일까지 기간에 대해 예금일에 영업점에 고시한 중도해지 이율을 적용합니다.
- ② 예금주가 만기일전 예금일로부터 1연동기간 이상 경과한 후에 지급청구 할 때는 매 연동기간의 총족분에 대해서는 매 이율결정일의 고시이율을 적용하며, 매 연동기간 경과 잔여기간에 대해서는 직전 이율 결정일부터 지급일 전일까지는 예금일에 영업점에 고시한 중도해지이율을 적용합니다.

제12조 장기예금으로 계약변경

이 예금으로 최초 약정예치기간보다 긴 예치기간으로 계약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.

제13조 분할해지

분할해지는 만기일시 지급식에 한하여 만기해지 포함 3회까지 허용합니다.

제14조 갱신

- ① 손님이 예금의 갱신을 신청하는 경우 금리확정형에만 적용합니다.
- ② 갱신을 신청한 계좌 중 아래 사유에 해당하는 계좌는 갱신이 되지 않습니다.
 1. 법적지급제한, 지급 및 해지제한 계좌
 2. 비과세종합저축을 신청한 계좌로 비과세종합저축한도를 초과한 계좌
 3. 이 예금이 은행사정에 의해 판매 중단될 경우 판매중단일 이후 만기도래되는 계좌
- ③ 갱신 시에는 갱신 당시 영업점에서 게시한 고시금리를 적용하며, 갱신 당일을 예금의 새로운 신규일로 하나, 휴일인 경우 익영업일로 합니다.

<부칙>

1. 이 특약은 2010 년 02 월 04 일부터 시행합니다.
2. 이 특약은 2014 년 5 월 23 일부터 가입하는 계좌에 적용하며, 기존 가입자는 기존특약을 적용 합니다.
3. 이 특약은 기존 가입자 포함 2015 년 09 월 01 일부터 개정 시행합니다.

4. 이 특약은 기존 가입자 포함 2016 년 06 월 07 일부터 개정 시행합니다.
5. 이 특약은 기존 가입자 포함 2017 년 03 월 03 일부터 개정 시행합니다.
6. 이 특약은 기존 가입자 포함 2021 년 03 월 25 일부터 개정 시행합니다.
7. 이 특약은 2023 년 02 월 13 일부터 가입하는 계좌에 적용하며, 기존 가입자는 기존특약을 적용 합니다.

※ 이 약관은 법령 및 내부통제기준에 따른 절차를 거쳐 제공됩니다.